

고 소 장

고 소 인 박 정 숙(

피 고 소 인 1. 보건사회부장관
2. 이 종 택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죄로 고소를 하오니 엄정히 조사하시어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의료보험의 실태

가. 의료보험이라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의료보험의 적용대상만 혜택을 받는 제한적인 제도이었지만 지역의료보험의 실시되면서 이제는 전국민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수익자 중심의 제도로 되었습니다.

나. 이러한 의료보험이란 직장의료보험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을 부담하고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세대주나 피보험자 본인이 그 전액을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보수수준에 따라 내거나 세대가 그 소득수준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근간이 되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조합운영의 기본경비에도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 즉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준비금등으로 잘 적립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및 국민의 의료서비스수혜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보험자인 각 조합의 의무라 할 것이고, 이것의 실현을 위하여 각 조합들을 성실히 감독하는 것이 의료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소인 이종택등은 현재 아래 2항과 같이 조합의 결산잉여금을 전용하고 있는 서울 제18지구 의료보험조합의 대표 및 이사, 경리직 담당자들이고 피고소인 ***는 이들을 감독할 책무가 있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직에 있는 자입니다. 한편 고소인은 1990.

12. 3.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하여 같은 회사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고소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매월 11,550원씩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보건사회부 예규의 재정 및 의료발전기금전용의 문제점

가. 그런데 보건사회부에서는 어떠한 법률이나 시행령등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의료보험적립금중 의료기관지원자금 조성, 관리규정”이라는 예규를 만들어 1994. 10. 1.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보유율이 전 3년도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조합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특정예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하여 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 예규 제4조에 따라 고소인 속조합을 포함한 각 조합은 적립율이 50% 이상이 되는 재원을 의료발전기금의 재원으로 각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위 예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법적일 뿐아니라 부당합니다.

(1) 의료보험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 위반

의료보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결산잉여금중 전 3년도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5에 상회하는 액을 평균연액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하고 있고 이러한 준비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하거나 조합의 현금지출에 부족이 생겨 대체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 제2항, 제45조). 그렇다면 위 예규의 규정에 따라 평균연액의 100분의 50을 상회하는 액을 의료발전기금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시행령 제46조는 준비금으로 적립하고도 남은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예규의 규정은 이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2) 단기보험의 성격에 반함

또한 위 예규는 의료보험의 단기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도 반합니다. 즉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매년 재정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길어도 3·5년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임에 대하여 의료발전기금의 내용이 의료기관에 대출금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여 10년이상 장기운영자금을 대출하고 있어 이는 단기보험인 의료보험의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3) 의료보험의 수익률의 저하

현재 의료보험 적립금의 수익률은 평균 13.5%에 이르고 있으나 보사부가 의료기관에 대출하려고 하고 있는 대출금리는 8%로 예정되어 있어 평균 5.5%가 낮은 것입니다. 이를 매년 의료발전기금에 각출될 예상잉여금 5,000억원에 대한 이율로 환산할 경우 275억원의 이자손실을 입는다 할 것입니다.

(4)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및 제47조 위반

또한 위 예규는 조합의 기본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 등의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47조 및 준비금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과 조합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미리 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 위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다. 즉 결산잉여금을 전 3년도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연액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평균연액의 50%에만 달하면 의료발전기금으로 전용하도록 한 위 예규는 아무런 상위법상의 근거도 갖지 못하면서 의료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에 행당하는 범법행위

가. 직장의료보험조합 대표 및 담당자의 죄책

그렇다면 피고소인 이종택등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 및 인사부 및 경리부 직원으로서 매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면서 조합 및 조합원들을 위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사무에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적립률 50% 이상의 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의료발전기금으로 전용한 것은 당연히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의 죄책

한편 보건사회부장관인 피고소인 ***은 의료보험제도 전반을 관掌하는 지위에서 각 조합들이 적절히 잉여금을 관리하고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오히려 위와 같은 예규를 제정하여 의료발전기금으로 전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므로 위 피고소인 이종택등의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범죄의 인식

한편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전용이 불법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 할 수 있으나 의료보험의 재무에 관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나 또는 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료보험법 시행령상의 규정을 잘 알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불법성 또한 익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죄책이 있는 피고소인들의 잘못과 위 예규의 불법성을 염히 조사하시어 다시는 조합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12. 5.

위 고소인 박 정 숙 (인)